

● 제301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2차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1. 6. 23.

운 영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박기열 의원(권수정 의원 등 29명 찬성)
- 나. 제안일 : 2021. 5. 27.
- 다. 회부일 : 2021. 6. 1.
- 라. 의안번호 : 2441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2011년 3월 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개인정보의 수집·유출·오용·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허용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(제24조의2제1항제1호~3호)에만 예외적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의 별지는 해당되지 않음.
- 본 조례의 별지 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(제1호), 의원상해등보상금 청구심의결과통보서(제2호)에는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음.

- 세종 등 11개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 또한 실무적으로 생년월일로 대체하여도 업무상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해당 의원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별지 서식의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대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별지 제1호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각각 “생년월일”로 하고 제2호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 함(별지 서식)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 법령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선희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2013년 개정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법률 제11990호, 2014년 8월 시행)에 따라 현행 「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)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함으로써 보상금 대상 의원과 보상금 청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제안 되었음.

2 별지 서식 중 “주민등록번호”를 “생년월일”로 변경함(별지 제1호·제2호 서식)

- 현행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은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·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(제24조의2).
- 빈번하게 발생해온 주민등록번호 대량 유출 및 악용 사례를 막고, 이러한 유출 사고를 야기한 개인정보처리자(공공기관·법인·단체 등) 등에 대하여 민·형사상 책임을 제대로 부과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함임.¹⁾
- 이와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경우 별지 제1호 서식(의원상해등 보상금 청구서)과 별지 제2호 서식(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통보서)에서 보상 대상의원과 보상금 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음.
- 해당 사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제정(2011년)되기 이전인 1995년에

1)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, 검색일: 2021. 6. 7.)

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양식으로, 이후 개정 없이 현재까지 운영 중임.

- 그러나 별지 서식에서 요구하는 보상대상의원과 보상금 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보상금 지급 심의 시 필수적인 사항이 아님.²⁾
- 또한 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(제34조)과 같은 법 시행령(제35조)에는 지방의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·허용하는 내용이 없으므로,³⁾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보상대상의원과 보상금 청구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함.
- 참고로 현재 인천광역시의회를 비롯한 11개 광역의회에서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여 운영 중임.⁴⁾
- 한편 주민등록번호 수집·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개정(2013년)된 지 8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, 담당 부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채 보상대상의원과 보상금 청구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해왔음.

2) 보상금 지급 심의에 필요한 부속 서류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 가능하므로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(서울특별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담당자 확인 결과, 확인일: 2021. 6. 4.).

3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제1항각호에서는 다음 각호로써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.

1. 법률·대통령령·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

4) 미개정 지역: 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충청북도, 충청남도 등 6개 지역(국가법령정보센터 (www.law.go.kr), 검색일: 2021. 6. 7.)

- 본래 법령의 개정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작업은 사업을 집행하는 담당 부서가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, 이를 방치하여 결국 의원 발의로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상황에 이르렀음.
- 2019년에도 본 개정안과 유사한 개정 목적을 가진 개정규칙안이 의원 발의로 제안되었던 적이 있는바,⁵⁾ 의회사무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매우 미온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.
- 의회사무처는 개정된 상위법 내용 반영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찾아 일괄 개정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.

5) 서울특별시의회 청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(의안번호 10-01051, 제안일: 2019. 10. 15., 홍성룡 의원 발의(김제리 의원 등 10명 찬성)).

제안 요지: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이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을 규정함에 따라 이를 청원서식에 반영하고자 함.